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지 역 개 발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238호, 2020. 4. 7. 공포, 2020. 10. 8. 시행)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지원 사항,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위탁 전문기관 명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(제13조의2)

지역개발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사업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자문 제공, 지원수단 연계 등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.

나. 지역개발통합정보망 위탁 전문기관 명시(제59조제2항)

지역개발통합정보망 위탁 전문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됨에

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하위법령에 명시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

1조의2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 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개발사업의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
2. 전문가 자문 결과와 용자·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
3.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7조”를 “법 제57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57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
2. 한국토지주택공사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13조의2(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지역개발사업의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2. 전문가 자문 결과와 용자·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.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제59조(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) 법 제57조에 따른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 대상이 되는 지역개발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59조(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법 제57조제1항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57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

다.

1. 한국토지주택공사
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669